

학교폭력 사안처리 Q & A 자료집

고양교육지원청

전담기구 구성과 운영

질문 1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다만, 전담기구를 매 학년 초에 구성하고 있는바 구성원(학부모 포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2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의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추천자 중에서 학운위 위촉안을 상정하여 학교장 위촉으로 결정됩니다.

질문 3 학폭 전담기구 위원의 자녀가 학교폭력 관련 학생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학교 내부 전담기구 운영관련한 규정집을 근거로 사전에 제척되거나, 기피, 회피를 신청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질문 4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오인 신고일 경우의 절차를 어떻게 되나요?

오인 신고라고 함은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사실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하고, 임의로 만든 양식에 학생 및 학부모의 서명을 받으신 후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종결 보고서 첨부) 발송하시면 됩니다.

질문 5 가해 관련, 피해 관련, 피가해 관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세요.

교육지원청 심의의결에 의한 조치 결정 전까지 가칭으로 피해 관련 학생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로 지목된 학생을 의미하며, 피·가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과 피해 관련 모두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질문 6 학부모와 생활지도 차원에서 상담하면서 자녀가 욕이나 거친 말 등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학폭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그러면 거의 매일 학폭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학폭사안으로 처리 원하지 않고 생활지도를 먼저 원할 경우는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지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다면 처리하여야 합니다. 접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담기구 심의 시 학교장 자체해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장은 관계회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징계 성격의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7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와 책임교사가 어떻게 협업하면 좋은가?

사안처리 초기 단계의 사안 신고 내용 확인, 상담 및 학생과 학부모의 확인서 작성 등은 담임교사도 가능하며 통상 학교폭력책임교사가 합니다.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전담기구 개최와 같은 이후 업무 처리는 책임교사가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책임교사와 전담기구는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질문 8 피해 학생 학부모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응대하나요?

추후에 회수한다 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학폭심의위원회 개최에 동의할 경우 진단서를 받도록 합니다.

질문 9 진단서 기간 '2주 이상' 명시처럼 효력이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개월 전 2주 진단도 효력이 있는지요?

진단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사안 발생 이후에 발급된 것인지, 내용이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지 학교 전담기구 심의에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수개월 전의 진단서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안 발생으로 학생의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질문 10 학폭 신고 이전에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 상담 등에 동의하여 수용하였음에도 시일이 지나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접수해야 하나요?

정식 신고 절차 없이 생활지도로 처리한 경우 신고 가능하며 학교에서는 무조건 접수해야 합니다.

질문 11 불법 촬영에 대한 지속성 해석이 궁금합니다. 불법 촬영 자체로 봤을 때 불법 촬영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해 관련 학생이 여러 명으로 개개인별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촬영이 아닌 1회 촬영으로 그쳤습니다. 이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교육청 심의를 요청하지만 도출된 피해 학생이 학교장자체해결을 원할 때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장 자체해결로 할 수 있나요?

사안을 접수 또는 조사하면서 피해 학생이 각각의 가해 관련 학생들을 신고하는 대상으로 보는지 또는 보지 않는지에 따라 가해 관련 학생인지 아닌지 결정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각각의 가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결속하여 불법 촬영을 했는지 아니면 가해 학생끼리 결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불법 촬영을 한 것인지 진술한 바에 따라 전자와 같이 집단으로 한 것이라면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가해 관련 학생 수에 따라 건당으로 처리되어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반대의 경우 즉, 가해 학생이 1명이고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사안 처리는 피해 학생별로 하여 4가지 요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담기구 심의 시 피해 측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참고하여 심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12 성 사안(성 범죄) 관련하여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1) 사안 접수
- 2) 학부모에 안내하고 학생 사실확인서 받음
- 3) 경찰서 및 여가부 신고(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4) 상담 기관 안내, 피해 학생 요구사항 적극 수렴
- 5) 학폭 절차 준수

질문 13 학폭 접수 이후에 피해 관련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장자체해결을 원하면 학폭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지어도 될까요?

피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가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합니다.

1) ①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질문 14 학폭심의위원회 심의가 요청된 상태에서 가해 학생이 보복 폭행을 한 경우에 별도의 사안으로 접수하여 진행해야 하나요?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건으로 처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보통 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동일 사안으로 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나 사안이 심각하면 별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15 학폭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학생이 오후에 등교하지 않을 경우 출석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에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질문 16 심의위원회 회부 시 가정으로 가는 심의위원회 안내 사항 중 사안 요약에 대해 학부모 민원이 많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모르시고 해당 교원에 대해 민원을 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 또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하고 싶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어떻게 이뤄지는 궁금합니다. 또한 민원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으로 개최 요청이 된 사안은 교육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학부모님의 진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더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학교로 제출하시게 한 후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제출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 전달추가자료는 얼마든지 제출하시도록 안내하시고 교육청으로 추가자료 공문 발송하시면 됩니다.

질문 17 사안조사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시안을 참고하세요. 날짜별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좋습니다. 정황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합니다.

질문 18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가해 학생에게 훈계 명목으로 접촉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부모가 처분을 경하게 받고 싶어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가해 학생의 사과편지를 요구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과편지(서면사과)는 학폭 심의를 거쳐 나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임의로 학교에서 개입해서 편지를 쓰게 해서는 안됩니다.

질문 19 일반인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신고로 접수
2) 피해 사실확인 하여 교육지원청 보고
3) 피해 학생 측에게 “교육지원청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 학생 보호조치만 가능하며, 가해 일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불가하며 가해자에 대한 경찰 신고 개인적으로 가능함”을 안내
4)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할 경우 미개최동의서에 사인하여 교육지원청 보고
5) 피해 학생 보호조치 요청할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개최 요청 공문발송

질문 20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꼭 공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가요? 교육청 상담교사처럼 학부모님들 연결해드리면 지원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당과 관련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질문 21 사안 조사서에 보면 관계회복 프로그램, 갈등 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시점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것이지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학폭 심의위 개최 전까지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진행 가능하며, 사안 접수 후 교육청 심의 개최 요청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학폭 사안 처리

질문 22 타 학교와 공동 학교폭력 건이 접수되었을 때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1) 각 학교가 서로 연락하고 및 협조공문으로 사안 공유하여 각 학교에서 접수 및 사안 조사
 - 2) 각 학교는 소속 학생 사실 확인하여 교육청 보고
 - 3) 피해학교에서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 가) 학교장 자체해결일 경우 : 학부모에 안내하고 자체해결 동의(서명)받고 교육지원청 보고와 가해학생 학교에 전담기구 심의 결과 및 자체해결 동의서 공문발송
 - 나) 개최 요청일 경우 : 학부모에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심의회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발송과 가해 학생 학교에 전담기구 심의 결과 공문발송
 - 다) 가해 학교에서는 피해학교에서 받은 공문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 또는 개최요청 공문 발송
- ※ 가피해 학교 모두 두 학교가 협의하여 비슷한 시기에 교육청 사안 보고 및 개최 요청 공문발송

질문 23 공동 학폭 발생 시 상대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 확인서를 공문으로 보내주길 요구해 올 때 제공해야 하는가?

상대 학교의 전담기구에 본교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확인서는 제공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 학교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질문 24 학교 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관련 학생 학교에서 가해 관련 학생 학교에 학폭 처리 절차와 결과를 반드시 보고 또는 공유하여야 하는가?

요구가 있거나 없거나 관련 없이 학폭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보고서 내용, 학폭 처리 과정과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서 공유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질문 25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반이 아니어도 분리 조치를 해야 하나요?

같은 반이 아니어도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분리 조치합니다.

질문 26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인데 다 각자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분리조치를 시행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 내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가해 학생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다만,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Wee 센터)를 이용하여 분리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이 다른 경우는 등교해서 각 반에서 수업할 수 있으나 화장실 이용을 위한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서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 27 분리 조치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 알려주세요.

가해와 피해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 관련으로 분리했다가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일 학교, 동일 학급이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을 가해로 지목한 학생이 맞신고할 경우 최대 3일 분리 조치 동일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서로 분리를 원하는지 알아보고 분리 시행하되 분리방법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진행합니다.

- 1) A-피해 B-가해(B 학생을 A 학생과 다른 장소로 분리)
- 2) A-가해 B-피해(A 학생을 학생과 다른 장소 분리)
- 3) 맞신고의 경우 A와 B 서로 다른 장소에 각각 분리

정보 공개

질문 28 학폭 관련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일 경우 관리소장의 CCTV 영상공개의 협조는 의무인가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협조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입회하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판단합니다).

질문 29 교육청에서 학교 CCTV 자료 요청 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관하는 이유, 활용 목적 등을 내부결재로 남기고, 교육청에 발송하는 것도 모두 공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질문 30 학폭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보고서 내용을 학부모가 요구 시 공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학폭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중대한 사안 내용이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질문 31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질문 32 학폭 관련 피해 학생의 전학 요청 건입니다. 가해 학생이 8호 전학 조치가 나왔는데도 피해 학생이 전학을 요청하는데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학교가 맘에 안 들어 옮기고 싶었던 학생의 경우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환경변화대상자로서 피해 학생의 전학 요청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악용 가능성이 있어 담임교사와 책임교사가 긴밀하게 협조하되 학교장이 결재 하에 진행합니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질문 33 가해 학생이 1호 '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 미이행 혹은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자가 재작성을 요구할 경우 재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보호자가 강하게 성의 있는 서면사과를 요구합니다.

서면사과는 양심에 관한 것으로 사과 내용을 재작성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작성 시 담임교사와 책임교사가 안내를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4 가해 학생 조치로서 '학급 교체' 어떻게 시행해야 하나요?

다른 학급으로 옮기되 피해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 1)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교실의 층을 분리합니다.
- 2) 층 분리가 어려울 경우 가장 멀리 떨어진 반으로 배치하며 이 외에 학교 내부 전입생 배치 관련 규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3) 옆 반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괜찮은지 동의를 얻도록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먼 곳으로 배치하길 권합니다.

질문 35 가해 학생에게 8호 '강제전학' 조치가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은 안가겠다고 버티고, 피해 학생 학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보내라고 난리였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교육, 동의서 등 확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 가해 관련 쪽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전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확정 후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학적변동(전학, 자퇴 등)을 제한합니다.

다만, 학교장은 피·가해 학생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 학생이 동시에 부과(병과)된 다른 조치(부가된 특별교육 포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8호(전학)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필수). 이때 가해 학생이 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에는 학교 간 그리고 교육청 간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36 교육청 심의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 이행 안내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지만, 어떤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안내가 필요합니다. (기관연락처 초중고 가능한지 명시된 곳 등)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사회봉사 이행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내부결재에 의해 교내봉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기관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사회봉사 기관 발굴하여 3곳의 심사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사회봉사 기관을 더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기관을 늘려 안내할 예정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질문 37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에 있어 졸업과 동시의 의미는 졸업식 날이 기준인지, 졸업학년도 말이 기준인지?

졸업과 동시에 삭제처리(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

질문 38 학폭, 인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대상별로 의무 교육시간을 명시해서 정리된 곳이 있을까요?

2022학년도에 배부해드린 탁상달력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달력을 배부하지 않지만 종합하여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 사안 처리 중 학교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지원팀의 답변과 함께 다음 구글 링크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현장 사안 처리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yil1j95GkK376EyktmUf6-8UX5KtwaZjdZiqb5X3E/edit?usp=sharing>